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7
----------	-----

2024. 12. 11.(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7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태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정원문화 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정원 교육센터) ‘충청북도 정원 교육센터’ 를 설치하도록 함.
 - (교육비 부담) 교육 참가자의 경우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전문기관 위탁 운영) 효율적인 교육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 정원 교육센터」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원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도민과 전문가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회 제공 등으로 충청북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자치단체의 최근 정원교육 운영 상황을 살펴 검토한 결과, 충북형 정원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센터’의 설치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교육운영 사례조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직영>

연도	교육 과정	계획인원	수료인원	성 과
2024	정원전문관리사 (5~11월)	40명	40명	- 신청인원 : 193명(경쟁률4.8:1) - 자부담 10만원(24년 시범 운영)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직영>

연도	교육 과정	계획인원	수료인원	성 과
2018~ 2023	나무의사 등 17개 과정 (1~12월)	97,729명	101,285명	- 계획 대비 104% 달성 - 일부 과정(나무의사 양성 등) 교육비 부과

<청주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위탁>

연도	교육 과정	계획인원	수료인원	성 과
2019~ 2023	시민정원사 양성 (3~10월)	160	148	- 신청 경쟁률 평균 1.2~2:1 정도 - 교육비 무료 또는 재료비 부담 * 코로나로 수료인원 약간 감소

□ 타시도 운영사례

- 경기도(정원교육센터) : 총 1,300명 이상 시민정원사 양성(13~22) /연평균 144명
- 울산광역시(정원문화센터) : 연간 500명 이상 정원교육 실시
- 전주시(정원문화센터) : 매달 200명 이상 시민교육(초록정원사 34명)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1조에 ‘교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교육참가자 비용 부담 등의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히 규정함.
- 조례 개정안 내용과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표현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조례안 예고(' 24. 11. 19. ~ 11. 2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복형 정원교육 체계 마련의 일환인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충청북도 정원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전문가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등에 따라 충청북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777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7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3일
발의자 :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충청북도 정원문화 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라. 조례안 예고 : '24.11.19.~'24.11.25.(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정원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 조성·관리 등 정원 관련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정원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 조성·관리 등 정원 관련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p>

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정원문화 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정원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강사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정원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11조(정원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정원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500,000천원

- 연 사업당 최대 100,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안 제11조) 정원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	-	-	-	-	-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자담 등)		-	-	-	-	-	-